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의안번호 제2026 - 92호>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8. 1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6. 8. 18.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3. 기금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9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나. 운용방침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임
-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총괄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운용부서 : 각 기금관리운용 관·과·소
-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다. 기금조성현황(총무위원회 소관)

기 금 명	2025년도 말 조 성 액 ㉑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 성 액 ㉒=㉑+㉓-㉔	증 감 ㉕=㉒-㉑
		수 입㉓	지 출㉔		
합 계	62,409,052	5,840,439	43,973,045	24,276,446	△39,094,64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4,315,125	1,256,267	38,842,884	16,728,508	△37,586,617
고향사랑 기 금	984,552	402,186	166,461	1,220,277	235,725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권역개발기금	-	4,030,000	4,030,000	-	-
식품진흥 기 금	134,971	49,450	49,100	135,321	350
중소기업 육성기금	3,814,518	22,750	800,000	3,037,268	△777,250
아름예술제 진흥기금	536,811	11,447	10,000	538,258	1,447
사회복지 기 금	2,623,075	68,339	74,600	2,616,814	△6,261

4.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5년도말 조성액 ㉠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계	54,315,125	1,256,267	38,842,884	△37,586,617	16,728,508
재정안정화계정	41,575,902	952,614	37,400,000	△36,447,386	5,128,516
통합계정	12,739,223	303,653	1,442,884	△1,139,231	11,599,992

2) 수입계획

○ 재정안정화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42,528,516	42,528,516	0	
공공예금이자수입	952,614	952,614	0	
예치금 회수	41,575,902	41,575,902	0	
기타회계전입금	0	0	0	

○ 통합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13,042,876	13,042,698	178	
공공예금이자수입	303,653	303,475	178	
예치금 회수	12,739,223	12,739,223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	-	-	

3) 지출계획

○ 재정안정화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지출액	당초지출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42,528,516	42,528,516	0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5,128,516	5,128,516	0	
일반회계 전출금	37,400,000	37,400,000	0	

○ 통합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지출액	당초지출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13,042,876	13,042,698	178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예치금	11,508,892	10,508,892	1,00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치금	91,100	91,100	0	
공기업특별회계 예치금	0	31,747	△31,747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0	1,000,000	△1,000,000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1,410,959	1,410,959	0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이자상환	31,925	0	31,925	

나. 사회복지기금

1)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5년도말 조성액 ㉠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말 조성액 ㉡ = ㉠ + ㉢
		수입㉢	지출㉣	증감 ㉤ = ㉢ - ㉣	
사회복지기금	2,623,075	68,339	74,600	△18,261	2,616,814
노인복지계정	1,134,353	30,339	19,600	10,739	1,145,092
자활계정	1,488,722	38,000	55,000	△1,700	1,471,722

2) 수입계획

○ 노인복지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1,164,692	1,164,692	0	
공공예금이자수입	30,339	30,339	0	
예치금 회수	1,134,353	1,134,353	0	

○ 자활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1,526,722	1,534,722	△8,000	
기타사업수입	2,000	10,000	△8,000	자활사업 매출액 등
공공예금이자수입	36,000	36,000	0	
예치금 회수	1,488,722	1,488,722	0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0	0	0	

3) 지출계획

○ 노인복지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지출액	당초지출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1,164,692	1,164,692	0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	9,600	9,600	0	
경로당 긴급 보수 지원	10,000	10,000	0	
노인계정 예치금	1,145,092	1,145,092	0	

○ 자활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지출액	당초지출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1,526,722	1,534,722	△8,000	
자립역량 교육지원	10,000	10,000	0	
자활한마당 참가지원	7,000	7,000	0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환경개선	8,000	8,000	0	
민간융자금	0	50,000	△50,000	
구상대로마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000	0	30,000	
자활계정 예치금	1,471,722	1,459,722	12,000	

5. 검토의견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자수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특별회계 간 예수·예치금 과목을 재조정하여 기금운용의 회계적 정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
- 세부 항목별 주요 검토 내용과 의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당초 계획상에는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을 통해 이를 전액 취소 및 유예하고 예치금(115억 8,892만 5천 원)으로 전환 적립하였음. 원금상환 일정을 연기하고 기금 내부 예치금으로 보유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상환 유예가 농업 지원 사업의 차질이나 자금 유희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본청의 편의적 재원 조달 수단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정밀한 검증이 요구됨.
 - 둘째,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74억 원을 지원함에 따라, 2025년도말 기준 543억 1,512만 5천 원에 달했던 기금 조성액은 2026년도말 기준 167억 2,850만 8천 원으로 무려 69.2%(약 375억 8,661만 원)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지방재정의 '안정판'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기금 적립금이 대폭 소진됨에 따라 향후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이나 대규모 재정 수요

발생 시 대응력이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집행부는 단순한 단년도 재원 충격을 넘어, 향후 기금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재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임.

나. 사회복지기금

- 노인복지계정은 수입·지출 변동 없이 당초안(11억 6,469만 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매출 수입 800만 원 감액 반영하고 지출부분은 집행 실적이 부진한 민간융자금(5,000만 원)을 감액하여, (구 거창기상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3,000만 원)로 신규 반영하고 잔여분은 예치금(1,20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함.
- 거창지역자활센터가 기존 민간 건물 임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안고 있던 상황에서, 공공재산인 구)거창기상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이전 추진하는 것은 임차료 절감 등 군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자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임.
- 기타사업수입이 80%(800만 원) 감액된 점은 자활 사업단의 매출 부진을 나타내는바, 센터 이전 및 시설 개선이 단순한 공간 확보에 그치지 않고 사업단의 생산성 증대와 참여자 자립 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자활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요구됨.



지 방 자 치 단 체 기 금 관 리 기 본 법

[시행 2025.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시행 2020. 9. 29.]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이하 “재정안정화 계정”이라 한다)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입액의 합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목의 경우 “합”을 “증가율”로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평균 증가율의 10퍼센트”로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